

제101회 제1차 시의회 회의록

1. 개의 : 단기 4292년 11월 28일 상오 10시25분
2. 폐의 : 단기4292년 11월 28일 상오 12시45분
3. 장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회 : 의장 김삼성 부의장 명남철
5. 출석의원 :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2명
결석의원 임석희, 김상태, 이정권,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박찬규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 일정

시장 신임인사

보고사항

- (1) 제100회 제1차 회의록 통과
- (2) 제100회 제2차 회의 통과
- (3) 진정서 접수상황 보고(남교동 방골목(히빠리 골목) 주민 제출분)
- (4) 의원 관외 출장결과보고(1. 정응표 의원, 2. 김경인 의원)
- (5) 탄원서 접수상황보고(호남극장 제출분)
- (6) 가암양수장 설치조사위원 활동상황보고

부의사항

1. 단기4292년도 제5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출경정예산안
2. 목포시 유 중요재산 매각처분안
3. 단기4292년도 제4회 목포시 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사회상황

개회선언이 있고 개회식이 있는 후 제100회 제1차 회의록 통과된 후 사회자 의장 김삼성 의원은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사회를 교체하였으니 넓으신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있자 출석의원 전체의 양해가 있자 의장은 개인적인 요무로 퇴장하였고 부의장 명남철 의원과 교체되다(시간 상오 10시 37분)

9. 토의사항

- 남교동 제33방민으로부터 제출진정의 건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남교동 하수구 설치 진정의 소개의원은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희 의원

- 도로보수는 목포 전체적으로 지급을 요할 개소가 많으나 남교동 공시(공설 시장) 새골목 하수구 설치공사야 말로 남교동 22방에 거주하는 방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시민주부들의 필요 통로로서 고효과면에 비추어 공사비도 다액을 요하지 않으니 의원제위는 깊으신 고려와 찬동이 있으시길 바란다.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본 건은 예산관계가 결부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 회부 할 것을 선언

- 호남극장으로부터 제출된 탄원의 건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탄원내용인 바 당시의회의 찬동이 있으면 호남극장 완성을 위하여 거시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인데 소개 의원보충설명을 바란다.

◇ 김상대 의원

- 지금 목포에 3개의 극장이 있다. 그러나 서울의 웅장한 시설을 갖춘 극장과는 비할 바가 아니고 광주만 해도 목포극장과는 모든면에 훌륭한 설비를

갖춘 극장이 8개나 있고 목포보다 적은 남원만해도 목포보다 좋은 극장이 2개나 있다. 이와 같은 타도시와의 대조를 해볼 때 일방으로는 한심함이 끝이 없었으며 일방으로는 문화의 전당이며 시민의 위안처가 설립되기를 기원하던 것인데 다행히 현대적규모로 호남극장이 건립된다함으로 시민의 위안을 위하여 마음속 기뻐던 것인데 도나 서울에서 반대를 한다니 그 이유가 납득하기 곤란하다. 듣자니 손재형 의원도 본건 추진을 위하여 관계 요로 간부에게 명함까지 써서 소개까지 하였다 하는데 본건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 해서는 본건 완성을 위하여 거시적으로 도지사나 국회의원까지라도 건의를 해서 완공되기를 바랄뿐이다. 본인의 현재 상식으로는 허가 자체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본건 좌절은 목포로써 시민의 위안처이며 문화의 전당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해둔 바다.

◇ 김성균 의원

- 방금 김상대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 납득이 되었을 줄로 사료되는 바나 허가되지 않은 이유로서는 학교와의 거리가 300米(m) 이상이어야 되는데 164米(m)이므로 허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호남극장과 중앙국민학교와의 거리에는 언덕 있고 그 언덕을 재면 281米(m)가 되며 언덕이 자연적으로 암영관계를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시험을 한 결과 학교의 정서교육에 지장이 결론이 내려 그 상황을 도에 보고한 즉 도에서는 4부장관의 통첩에 의거 교육청 당무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부장관의 통첩이 교육에 지장을 초래치 않기 위한 것이니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목포에는 반듯한 극장 하나가 없으며 타도시에 비해서 관람객에 대해서 대우가 나쁘다. 다시 말하면 극장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니 우리 전체 목포10만 시민은 본 호남극장완성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 정응표 의원

- 신문만해도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보도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도정감사 할 것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본 건 완성을 위한 진정을 보건데 업자의 심정은 알고 남음이 있으나 본인의 심사도 소개의원의 심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의회전체로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태도를 결정할 문제이다. 타도시의 실정은 4부장관의 통첩이 있기 전이며 또한 국·도정정사반의 의견

을 모르고 있으며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임으로 신중을 기하고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케 함이 若何(어떠한가)

◇ 김경인 의원

-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본 건은 목포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 지역사회 정서교육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은 시설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라 생각되며 목포의 문화가 발전되지 않는 이유는 대자본가의 진출이 없는 것에 기인된 것인데 다행히 호남극장이 規模的(규모적)으로 건립된다는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였는데 4부장관의 지시에 의거허가가 되지 않는 다는데 그 지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지시는 서울을 두고 행한 문제라 생각되며 300米(m)가 교육적인 면에서 나왔다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시적으로 우수한 시설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 교육상 지장이 되어있다. 어느 사람의 이권으로 제지되고 있는가의 여부 등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산중을 기하는데 찬성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정응표 의원의 동의대로 조사의원위원회를 구성하되 조사위원을 각상임위원으로 구성함이 약하(어떠한가)

◇ 김일섭 의원

- 소개위원을 넣어서 구성하여줄 것을 요청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김상대의원, 김성균 의원, 정응표 의원 3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13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선언하다

· 의원관의출장결과보고

◇ 정응표 의원

- 나주과동을 지양시키기 위해 임석희 의원과 나주출장을 하였는데 임 의원이 본회의에서 불참하였음을 본 의원이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주측 공사는 나주읍의회와의 공사진행결의에 의해 착공을 보게 된 것인데 나주 읍민들은 비료공장용수도 부족한 것인가의 확증도 못 얻고 본 공사 착공을 승

인한 것인데 착공시 인사도 없이 착공함에 불쾌감을 갖고 나주 호남비료공장건립을 위하여 조직된 라(주) 건설대가 주동이 되어 나주읍의회에 결의를 알리면서 3개 조건에 대한 해명이 없으니 보고해 달라는 탄원서가 나주읍의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나주읍 정치동태는 나주읍장이 임기만료로 의회간에 약간의 알력이 있었으며 일방으로는 나주교육위원이 도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로 인한 교육위원이 공석으로 정치동태가 평온치 못했습니다. 이 시제에 건설대는 인사가 없어 3개조건의 해명을 요구하니 현장감독에게 인사도 없이 착공하였는가를 질책한 즉 인사를 차렸다 하며 보상 대책자가 읍의장집에서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고 읍의장과 목포시와의 간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나 의심하고 나주건설대가 주동이 되어 봉기한 것입니다. 그대 사유를 나주읍의원 각위를 납득시켰고 3개조건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도 않고 있으니 새행않았던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착공중이지 아닌가 하고 설명하였으며 인사가 결한 것은 시장이 4개월동안이나 공석으로 연유된 것이 양해를 구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나주읍의회측에 인사가 결한 점을 질책하였다고 약속. 다음착공을 부탁하고 그날의 읍의회를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목포세무서에 근무하던 허덕봉씨가 본 건 해결하는데 여러모로 협조가 컸음을 보고해드립니다.

· 가암양수장 설치 위원활동상황보고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5인위의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성균 의원

- 5인위는 거반 좌담회의 결의에 의해서 명남철 의원, 박두순 의원, 김일섭 의원, 정응표 의원, 본 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전기시설에 의한 가암양수장을 설치하면 어떠한 시민의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 수원지가 만수가 되면 제1,5수원지가 248만, 제3,4수원지가 2년10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많은 수원을 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느냐 하면 송수능력이 없어 못 먹게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용당동 가암양수장 시험결과 일당 1400톤의 물을 370일 동안 용수할 수가 있었고 50마력

에 의한 양수를 가하면 일당 2,400톤을 더 얻어 쓸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당12,000톤의 송수가 있어야만 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 것인데 4,500톤 내지 5,000톤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두 양수를 하면 평상시 7,000톤을 용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3,4수원지(군산동)의 송수량이 1,000여톤에 불과하는데 3,00톤이상을 송수할 수 있으니 제3,4수원지를 2개 더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15,000,000환을 가지고 전기가설을 하며, 2개이상의 수원지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 전기가설이 없이는 격구제급수를 해도 달산수원지가 명년 10월 제3,4수원지가 4294년 1월 전기가설에 의한 매일 급수를 하여도 달산수원지가 93년10월16일 제5수원지가 명년 5월14일 가압양수로 매일 2,400톤의 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1,500만환이 든다해도 전기가설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양공장의 협력으로 금년도에 약 8백만 환의 자금이 융자가 될 수 있으니 불일내에 착공을 봐야되며 착공을 위한 의안이 제출되었다 생각되며 7백만 환은 조흥은행에서 일시차입으로 하게 될 것이 라보며 앞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말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관외출장결과보고

◇ 김경인 의원

- 전력사정을 조사키 위하여 조양순 의원, 천철수 의원과 본 의원 3인이 조사를 위촉받고 서울 전력과장을 방문 30,000k 출력발전 즉 설치문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전력과장은 미국인을 대동하고 내목(來木)한 안내자로 안면이 있는 분이였으나 상공부로서는 속수무책이며 출력비율에 의해서 송전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월동대책으로 저 광열 등에 의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출력문제는 남전(南電)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남전을 심방하였던 바 44%를 경전에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수도이기 때문에 경전은 배전에 있어 우위적인 입장에 있음을 말하고 목포는 최남단이기 때문에 송전이 부족함이 자가발전을 하여 보충하여 주기 바라고 있으며 송전의 중요시간인 6시경에 등이 깜박거리니 송전시간과 전기요금등의 책정문제 등을 타합한 결과 요금책정시 경전 측이 18환을 소홀히 하여 평균하여 차액3환을 가지고 1환50전을 결정함에 경전 측이 이윤을 가져와서 경전 측이 이윤을 가져와서 경전은 발전되고 있는데 남전은 적자를 보고 있는 현상이였으며, 목포에 배전량은 4,000kdlsep 2,500k로 줄어드는 감전에 의한 것이며 감전량은 남전측이 이익을 보지 않나 질문한 즉 3,000k에 12%를 봐주는데

23%의 전력이 도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모된다하며 목포지점은 송전이 많음으로 이익을 가져오며 적으면 적을수록 손해가 크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적인 문제임으로 지역적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출장을 마쳤습니다.

· 시장 신임인사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그러면 다음으로 시장인사 말씀을 하여주시오.

◇ 시장

- 지나간 11월 12일자로 정부발령으로 제가 시장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일 취임했습니다. 원래가 박덕하고 천학비재한 본인으로 이 시국의 중차대 시중책을 완수할 것인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책임완수에 노력하겠으며 의원제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시장으로서 시정지표를 갖었는데 첫째, 인화를 취해서 하겠습니다. 책임행정 완수를 위하여 인화로서 굳게 뭉쳐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성실인데 이는 단결하는데 지표가 되는 것으로 택했고 셋째, 겸양인데 멸사봉공을 하여야 되겠는데 이를 수행함에는 겸양한 행실을 하여야 하겠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면의 일로서는 상수도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삼학도 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수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듣건대 여러 의원이 힘쓰고 있다는 유달산녹화운동을 전개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할 각오를 가졌습니다. 제가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은 여러 의원께서 제가 기원하는 소기의 목적달성에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93년도 시정방침은 차기적답한 시일에 본회의에서 발표하겠습니다.

◇ 김성균 의원

- 인사가 시정지표가 있고 시정방침까지 말씀하셨는데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김 의원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질문은 차기 예산심의시간에 의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균 의원

- 무엇이 타당합니까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제 의견일 뿐입니다.

◇ 김창희 의원

- 사람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쉬우나 잘못된 것만이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전 하동현 시장은 일제시부터 현안이든 여러 공사가 하 시장에 의해서 착공 되었으니 하 시장의 송덕비를 새워 그분의 공을 찬양할 것을 긴급동의 제안 합니다.

재청이 있었다.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희 의원

- 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달산 달선각 근처를 택하고 건립위원은 5명으로 하되 의원지명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자

◇ 김성균 의원

- 비는 관계에서 완전히 은퇴 후나 사망 후 건립하는 것이 어떠한가. 한번 건립하면 전례가 될뿐더러 관계에서 은퇴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 조양순 의원

- 본인 생각으로는 그분의 연령을 봐서 다시 관계에 다시 투신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망 후를 택한다하나 생전에 건립 못할 바 아니나 김창희 의원 동의에 찬동하면서 소견을 드린다

◇ 정응표 의원

- 이런 안건은 본 회의에서 입안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타합을 봐서 입안할 성질의 건이라 본다. 왜냐하면 하행정의 총결산인 12월 2일부터 실시되는 감

사를 끝내놓고 논의해야 좋을 것으로 보며 유달산에 건립한다하나 그분의 공적은 상수도 공사에 있는 것이니 동 공사 준공이나 감사 후 건립할 것이 타당한 처사로 본다

◇ 김성균 의원

- 그분이 시장을 하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를 미리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다. 시민의 송덕의 공 희구한다면 다음 3대 의회에서는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김창희 의원

- 송덕비는 당사자가 현직과 퇴직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되며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의 비석이 건립되어 있으며 가까운 흑산에도 많이 건립되어 있으니 ?? 은 급히 서두르라는 말과 같이 지급히 건립함이 어떠한가

사회 재청 삼청이 있어 건립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건립위원회 구성에는 ? 의가 없어 위원을 결정하다. 김삼성 의장, 김성균 의원, 정응표 의원, 김창희 의원, 김경인 의원

- 단기4292년도 105회 목포회계세출경정예산안
- 목포시 유중요 재산 매각처분안
- 단기4292년도 10회 목포시 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과장

- 제안이유설명

◇ 김경인 의원

- 재산매각처분은 진정서에 의거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단가는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김일섭 의원

- 주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오.

◇ 총무과장

- 학교측에서 책임지기로 되었습니다.

◇ 김상대 의원

- 시에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금년 봄 소작권 양도금이 평당 7백만 환, 8백만 환이 있습니다. 시 재정이 궁핍상태에 있는데 듣건데 학교측은 찬조형식을 2백만 환에 매수 계획이라 하니 어디까지 정당한 가격을 매도하여 주기 바란다.

◇ 김성균 의원

- 공설운동장이 명년도에는 착공되리라 생각이 든다. 가량 유달중학교에 매도한 대지가격이 인접대지가와의 차질이 생길 경우 심계(원) 감사에 말썽이 없게 하기 위하여 감정위원을 결정하여 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김경인 의원

- 이 문제는 진지한 토론의 기회를 가졌고 전반좌담회에서도 기증은 할 수 없고 학교에서 현실판으로 매입한다해도 곤란함을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 학교는 영리단체가 아니며 기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본다. 그러니 좌담회시 합의로 하든지 결정을 하여 주기 바란다.

◇ 조양순 의원

- 유달중학교와 관계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본 토지는 지적상 전(田)이 아니며 대지인 만큼 농지계획법 저촉여부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격 문제는 김성균 의원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나 학교는 영리단체가 아닌 이상 박 시장도 본 대지의 용도는 육묘사업에 쓴다하였으니 노랭이 생각하고 대지가격을 사정하여 주기 바란다.

◇ 김성균 의원

- 내가 꼭 유달중학교에다 비싼 대지가를 받도록 하는 속이 의도된 것 같으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타진하자는 것이다.

◇ 김일섭 의원

- 전(田)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조양순 의원은 말씀하였는데 경작되고 있는

전(田)은 농지계획법에 의하여 제 재문제가 되는 것을 염려해서 집행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다.

◇ 조양순 의원

- 전(田)이면 경작자 소유로 되는 것인데 대지이기 때문에 지주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 김상대 의원

- 농지계획법에는 저축이 되지 않는다. 내 생각은 김성호씨의 사례금 확보를 위하여나, 또는 재정법상으로는, 합법으로 띠여주라는 것이며 유중에다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정응표 의원

- 교육기관에다 매도하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여분의 대지는 처분할 때 정리문제가 걱정이 된다. 총무과장의 경위설명과 같이 경작자처리문제 등 기술을 요할 점이 많으니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제안된 전 안건을 회송하기를 개의를 한다. 재청, 삼청.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동의를 철회하고 개의를 동의로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송할 것을 선언하다.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11월 29일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주도식

제101회 제2차 시의회 회의록

1. 개의 : 단기4292년 11월 30일 상오 10시35분
2. 폐의 : 단기4292년 11월 30일 상오 12시40분
3. 장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회 : 의장 김삼성 부의장 명남철
5. 출석의원 :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2명
결석의원 임석희, 김일섭, 이정권,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 일정

보고사항

- (1) 부의안건에 대한 내무위원장 종합심의보고
- (2) 진정서접수상황보고(만호동3번지 주민제출분)
- (3) 탄원서 처리 전말보고(호남극장 제출분)

부의사항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 만호동3번지내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의 건

◇ 김삼성 의장

- 본 건은 법에 저촉되니 상정시킬 성질이 아닌데 소개의원의 보충설명을 바란다.

◇ 정응표 의원

- 본 건은 재판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재판에 패송되어 번에 순응하였으나 승송자 이병문과 타합을 할 수가 없으니 진정인을 위해서 시의회로 하여금 명도연기를 절충하여 줄 것을 밝혔습니다.

◇ 김삼성 의장

- 본 건은 일응반려하고 출신구 시의원이 절충하여 줄 것을 선언하고 노르웨이인이 병원건립을 위하여 4회에 걸쳐 내목한 관계로 (명남철 부의장과 사회를 교체하였음)

· 호남극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의 건

◇ 정응표 의원보고

- 11월 28일 본회의 결의된 바에 의해서 즉일 실시답사한 바 토요일이어서 관계 관공서는 하오인 관계로 조사할 수가 없었으며 극장의 일반적인 건만 조사돼 조사도중인 미진상태입니다.

◇ 명남철 부의장

- 본 건은 조사가 이미 되었으니 조사완료시까지 연장함이 어떠한가. 재청, 삼청이 있고 이의 없음으로 채택선언

· 내무위원회 종합심의보고

(1) 단기 4292년도 제5차 목포시일반회계 세출 경정예산안과 단기4929년 제4회 목포시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습니다.

(2) 목포 시유 중요재산매각 처분안은 부결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 명남철 부의장

- 92년도 제5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출경정예산처분을 상정합니다.

◇ 김경인 의원

- 본 건은 단 하나 김성호 지불금의 400만 환지출에 지장이 없는가

◇ 장건식 총무과장

- 예산서에서 계상된 것이오니 12월말이 되어야 알겠습니다.

◇ 김창희 의원

-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 명남철 부의장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선언, 92년도 제4회 목포시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김경인 의원

- 가압양수 시설을 위하여 금년에 800만 원을 내년에 기채할 것인가

◇ 장건식 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성균 의원

-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난사가 많을 줄이나 이 문제가 시민에게 보도되자 13만 시민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공사는 중대한 공사인 만큼 이 안이 통과되면 본 공사를 즉시 착공할 것인가의 여부를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 건설과장

- 금일통과를 하여주면 금일이라도 문서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회송하겠다. 단 전주가 구입난이라 하므로 공사일정은 전주말고도 1개월 완공에는 2개월이 소요되리라고 본다.

◇ 정응표 의원

- 본 건은 착안자체부터 기분이 나며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조속 해결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 명남철 부의장

- 원안 무수정 통과선언

중요재산매각 처분안 상정 선언

◇ 정응표 의원

- 내무위의 부결통고대로 본 안 폐기하자 동의

◇ 김성균 의원

- 현재 유증은 보건장이 일각이 여삼추로 필요 불가결한 건인대 진정서 제출 후 반년이 넘은 금일에 와서 안건을 폐기하고 임대차계약 운운하면 집행절차가 되지 않는다.

◇ 김상대 의원

- 지(地)주인 목포시 정병조와의 소작자간에 임대차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조건부 기각이란 있을 수 없다. 매도대금을 가지고 좌로 우로 할 것이 아니라 매도대금 문제는 집행부의 일이니 관여 말고 매각처분 결의만 하여 주자.

◇ 김창희 의원

- 이 문제의 중요점은 토지사용주가 경질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진정 등의 대비책은 여하한가

◇ 김성균 의원

- 현재 점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여부 여하한가

◇ 정응표 의원

- 본 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심심한 타협 후 상정한것인데 여러 의원의 태도는 학교에 주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하는데 초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 김상대 의원

- 학교측에 매각치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30여 세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김경인 의원

- 본 건은 내무위의 부결통고가 있는 것으로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제로 삼고말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수개월동안에 걸쳐 토론도하고해서 원만히 해결을 지어온 것인데 내무위의 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라고 회의 규칙을 무시할 수 없으니 회의규칙에 의거 본 회의에서 상정하여 줄 것을 동의한다.

◇ 김상대 의원

- 이런 문제를 결정키 위하여 행정부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본 진행이 모순된 회의사항은 아니다. 계약은 이중계약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니 김성균 의원의 동의에 삼청하는 바다.

◇ 김상태 의원

- 여타의 토지를 매매시 본 건 매도로 인하여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 사료되나 유중에 매도를 앓는다면 혀 점유자의 처리를 못할 것이 아닌가. 매도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 명남철 부의장

- 17조의 규정이 문제가 되나 김경인 의원의 동의에 첩청까지 있으니 본 회의에 상정되었음을 선언

◇ 장건식 총무과장

- 매도대금을 결정하여 주면 타 토지를 매각시 심계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여러모로 생각할 때 내무위의 결정이 선택이라 생각되며 임대차계약이 있어도 일부는 계약이 되어 있으나 계약조문이 시에 유리하게 되어있으니 계약상 지장은 없으며 철거에 있어도 매도나 임대차계약시 조문에 의할 것으로 철거책임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구매는 받지 않을 것이다.

◇ 명남철 부의장

- 답변에 불충분한 점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균 의원

- 학교측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철거단행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 장건식 총무과장

- 임차율 한다하여도 계약조문에 의하여 좌우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인 의원

- 재산처분안을 여러번 말씀드려 죄송하나 이 사람생각으로는 학교측이 시와의 임차계약을 가옥철거명령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무위의 심의가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본 승소 토지의 첫 사업이 육영사업건에 염가로 매각한다 하여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도대금 200만 환이라 결정을 하여 매도 결의를 한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 김삼성 의장

- 매도대금 200만 환이라 결정지어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한다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후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니 매도가를 결정지은 것이 좋다. 아마도 가격문제를 집행부가 회피할 것 같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인심도 쓸 수 있는 것이니 5분간 휴회해서 전체 의원이 합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 정응표 의원

- 집행부를 나무랄 것이 못된다. 이 문제는 의회 측 역시 이를 거둬온 것이다. 육영사업이 중하기는 하나 전례가 되어서 15만평은 흐지부지 없어지게 된다. 육영사업을 중시치 않은 것이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있다.

◇ 김상대 의원

- 이 문제는 가격을 작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가격을 논하면 의회 측 월권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격문제는 행정부에서 할 문제이고 우리의회 측은 매도여부를 결정 지으면 족하다.

◇ 김삼성 의장

- 이 문제가 상정된 것이 6개월이나 됨을 내용은 의원이 더 잘 알고 있다.
가격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 김성균 의원

- 깨끗이 매각처분한 것이 좋다

◇ 김경인 의원

- 심계원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가격에 대해서 못을 박는 것이 선택이다.

◇ 사회 명남철 부의장

- 5분만 휴회를 선언하다.
5분후 속개를 선언

◇ 김남진 의원

- 본 의원은 다수결에 의할 것을 생각하고 발언을 하지 않하였으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심각한 토론을 하여왔으니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격에 대해서도 200만원 내외로 못을 박고 월권된 사항은 좌담회시의 승은요령에 의하여 본 안 승인 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 삼청)

◇ 정응표 의원

- 예산심의와 문제가 되는 것이나 시청의 꼬락서니가 어찌된 판인지 모르겠다. 승소 토지 15만평에 대해서 신년도 예산에 하등의 계획이 없으니 웬일인가? 전체15만평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수개월이 된 오늘 본 진정건만 상정이 되니 여타의 계획은 없으니 13만 시민의 이름으로 시청간부를 교체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며 15만평 승소에 대해서 시민의 기쁨이 어떠한가를 아려나 되며 방금 유증 보건장 문제는 김남진 의원 동의에 찬동하면서 조건을 부쳐 제언할 바다. (삼청)

◇ 명남철 부의장

- 만장일치 통과선언
폐회사가 있는 후 산회하다.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서명 날인함

단기4292년 12월 1일

시의원 김상대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주도식